

#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

(의안번호 제767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0. 28    고 성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0. 28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1. 5   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주 문

-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

### 3. 제안이유

-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동부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-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독서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보 이용과 문화예술 활동 및 평생 교육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### 4. 주요골자

- 도서관의 업무(안 제3조)
- 자료의 열람 및 대출(안 제5조)
- 자료의 분실·훼손 등에 대한 책임(안 제6조)
-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(안 제9조)
- 사용료 등(안 제10조)
- 도서관 및 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(안 제11조)
- 위탁운영(안 제14조)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동부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창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독서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 예술활동 및 평생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그러나 고성동부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의 제명의 보완, 개·휴관일의 지정,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삽입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조례 내용을 보면 도서관의 설치 부분이 있는데 「도서관의 설치」 부분을 제명에 삽입하여 보완 해야한다고 보는데 제안자의 의견은?

- 답 : 인접 도서관설치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「도서관의 설치」 부분의 제명 삽입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나, 현 제명으로 표기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사료됨.

## 7. 토 론 : 없음

## 8. 심사결과

- 2002. 11. 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